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중도부가서비스특약

2. 중도부가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약을 추가로 부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에 의하여 중도에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은 중도부가 신청시점에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된 경우
- (3) 중도부가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료 납입이 이미 면제된 경우
- (4) 감액완납된 경우
- (5) 기타 회사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경우

3. 중도부가특약의 부가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에 따라 중도에 추가로 부가하는 특약(“중도부가특약”이라 하며 이하 동일함)에 가입할 경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하며 이하 동일함)을 기준으로 가입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한다. 다만,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와 동일해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월납(일시납 제외)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매 보험료 납입월에 한해 중도부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나. 중도부가특약에 따른 회사의 보장개시일

- (1) 중도부가특약의 가입신청을 회사가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2) 제1회 보험료를 받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3) (1),(2)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부가특약에 암보장개시일 등과 같이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개시일

다. 중도부가특약의 특약계약일은 “나” 항의 (1) 및 (2)에서 정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한다.

라. 중도부가특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거절, 계약자의 청약철회, 취소, 무효, 해지, 2년 이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살하였을 경우의 효력, 암보장개시일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청약일, 계약일 및 보장개시일 등은 해당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3. 중도부가특약의 부가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의 “가” 항에서 정한 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중도부가일에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보험료로 한다.

나.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음에도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함)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다” 항에 한하여 중도부가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과 주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내용을 적용한다.